



어린이용 완구 세관장확인대상품목 및 수입통관 변경된다.

어린이용 완구, 자율안전확인공산품으로 지정

개요

- ‘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’ 제2조 및 제19조에 따라 어린이용 완구는 자율안전확인공산품으로 지정되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출고 또는 통관전에 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기관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 부속서36(완구)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
 - 그동안 작동완구에 대해서만 관세법에 의거 세관장확인대상품목으로 지정되어 왔으나 2009년 11월 2월부터 비작동 완구(봉제완구 제외)도 세관장확인대상품목으로 지정(관세청고시 제2009-115호)되어 관련제품 수입자는 자율안전확인 신고 또는 확인(사전신고한 제품과 동일모델일 경우 시료확인)을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다.
- 최근 일부 업체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통관되지 못한 수입품이 보세지역에 보관됨에 따라 물품보관비용 증가 등 수입에 따른 추가비용지출이 발생하고 있으니 해당업체는 통관전에 관련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한다.



주요사항

- 자율안전확인 부속서36(완구)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으로 제외대상여부 확인(성인용 취미용품 또는 조립식 정밀축적모형제품 등)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어린이용 완구 신고 및 인증기관인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.
 - 사업자등록증 및 수입자 정보(사업자명, 주소, 전화번호, 인터넷주소 포함)
 - 수입신고서 사본
 - B/L 사본
 - 수입하는 총물품수(수량 포함) 및 관련 정보(제품사진, 제조국, 제조회사명, 제품설명서, 제품모델명 및 번호 등)
 - ※ 제외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문의처: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(02-2102-2710)

- 어린이용 완구가 아닌것으로 확인받아 수입한 제품이거나 성인용 완구로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완구점, 문구점 및 어린이용품 전문인터넷쇼핑몰 등 어린이용품 전문판매코너 등에 유통되어서는 안되며, 자율안전확인인증마크(KC마크)없이 어린이용품 전문매장에 유통되는 제품은 불법제품으로 간주된다.

- 완구로 보지 않는 제품에 대해선 자율안전확인 부속서36(완구의 안전기준)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(02-509-7248)로 연락하면 된다.

